

# 이사회 운영 및 협력에 관한 지침

제정 1981. 8. 1            개정 1997. 6.25            개정 2016. 5.16  
개정 1983. 3. 1            개정 1998. 7. 8            개정 2016. 9. 7  
개정 1996. 2. 1            개정 2013. 3.14

## 제 1 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지침은 학교법인 포항공과대학교의 정관(이하 “정관”이라 한다) 제 9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 운영 및 협력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법인”이라 함은 대학 및 법인본부를 포함하는 학교법인 포항공과대학교를 말한다.
2. “법인본부”라 함은 사립학교법 및 법인의 정관 기타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 및 이사장이 수행하는 업무를 보조 및 집행하기 위하여 이사회 및 이사장 직속 하에 두는 사무 행정 조직을 말한다.
3. “대학”이라 함은 법인이 설치한 포항공과대학교를 말한다.

제3조(운영방침) ① 이사회는 정관 제1조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법인의 발전 방향을 정립하고 발전목표를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데 필요한 중요 정책을 심의, 결정 한다.

② 이사회는 법령과 정관, 이사회 운영 및 협력에 관한 지침(이하 “지침”이라 한다) 등에서 이사회 권한으로 정한 사항 이외에 법인 운영에 관한 권한은 이사장에게 위임하며, 그 중 대학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에게 위임한다.

③ 이사회는 법인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 시 중요 정책의 진행상황과 현안문제에 대해 관계자로 하여금 이사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이를 심의, 검토할 수 있다.

제4조(규정개정) 이 지침은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 의결로 개정한다.

## 제 2 장 임원의 권한과 의무

제5조(이사장) ① 이사회 회의를 주재한다.

② 이사회에 부의할 안건을 설정하고 중요정책에 대해 이사회에 의견을 제안하며, 이사회에서 수립된 정책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.

③ 기타 법령, 정관 및 지침 등에 규정되거나 위임된 임무를 수행한다.

제6조(부이사장) ① 이사회 및 이사장이 위임하는 바에 따라 법인의 업무를 관장하며, 법인운영에 관한 정책적인 사항에 대해 이사회 및 이사장에 제안한다.

② 이사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 제23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 이사장 직무대행자 지명 시까지 이사장 직무를 대행한다.

제7조(이사) ① 정관 및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,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

② 이사회에서 논의되는 정책수립 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나, 개별적으로 대학의 책정 집행 과정에는 관여하지 않는다.

제8조(총장) ①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대학운영에 관한 정책결정 및 집행을 책임지되, 정책결정과 집행은 법인의 발전목표와 이사회에서 정한 중요정책에 부합하여야 한다.

② 정관 및 지침 등이 정하는 이사회 부의사항 및 보고사항과 기타 대학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해 이사장과 협의하여 이사회에 의견을 제출하며, 대학의 현안 문제에 대해 수시로 이사회에서 심의, 검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.

### 제 3 장 부 의 사 항

제9조(의결사항) ① 이사회에서 의결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1. 학교법인의 예산, 결산,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,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
2.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
3.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
4.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
5. 총장 및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
6.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

7.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
  8.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
- ②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한 학교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.
1. 조직편제의 변경계획
    - 가. 학과, 대학원 신설 및 폐지
    - 나. 특별 교육과정 신설 및 폐지
  2. 정원운영계획 (교원, 직원, 학생)
  3. 시설건립 기본계획 (면적, 시기, 위치, 소요예산 등)
  4. 캠퍼스 마스터플랜
  5.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(교직원 보수, 학생 납입금 및 장학정책 운영계획, 발전기금 모금계획 및 수증결과 포함)
  6. 교원인사관련 주요제도 변경 및 연도별 인력운영계획
  7. 기타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10조(보고사항) 제3조 제3항에 의거하여 이사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1.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 (학사운영, 시설, 연구, 재정운영계획 등)
2. 연간 운영계획
3. 기타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## 제 4 장 회 의

제11조(회의 일정) ① 정기이사회는 년2회, 임시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.

② 정기이사회는 예산편성을 위해 매회계년도 개시 40일 이전에, 그리고 결산을 위해 매회 계년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개최한다.

제12조(회의장소) 회의 장소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 다만, 매년 최소한 1회 이상은 포항에서 개최한다.

제13조(의안제출) ① 이사회의 의안은 이사장 또는 각 이사가 발의한다.

② 이사장 이외의 이사가 의안을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적어도 회의 15일 전에 이사회 주관부서장을 통하여 이사장에게 제출한다.

제14조(회의통지) 이사회 주관부서장은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이사회 개최일정,

장소 및 부의안건을 확정하여 정관 제29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소집 통지서를 각 이사들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.

제15조(의안설명) 회의에 부의될 의안의 제안 설명은 당해 의안을 제출한 이사가 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필요에 따라 담당 실무자에게 대행시킬 수 있다.

제16조(긴급사항) ①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이사장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의거 긴급조치를 한 사항은 차기 이사회에서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제17조(회의록 등의 작성) ① 이사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내용은 이사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록(이하“회의록”이라 한다)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는 그 회의록의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다.

② 회의록 원본은 이사회 주관부서에서 보관, 관리한다.

③ 이사회에 공식적으로 부의된 안건 이외에 이사회에서 논의된 내용도 회의록에 포함할 수 있으며, 회의록에 기록된 사항은 회의록 그 자체로서 법인운영에 관한 중요 원칙으로 적용될 수 있다.

제18조(이사회 주관부서) ① 이사회 주관부서는 법인본부 경영지원팀으로 한다.

② 이사회 주관부서장은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이사회 소집통지, 회의장소 준비, 회의록의 작성 및 관리 등 이사회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무를 추진한다.

## 제 5 장 분과위원회

제19조(분과위원회 설치) 필요 시 이사장은 이사회에 분과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제20조(운영) 위원회를 설치·운영할 시 세부적인 운영에 대해서는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.

제21조(기능) (삭제: 2013.3.14)

제22조(위원장의 직무) (삭제: 2013.3.14)

제23조(임기) (삭제: 2013.3.14)

제24조(회의) (삭제: 2013.3.14)

제25조(간사) (삭제: 2013.3.14)

부 칙

이 규정은 1981년 8월 1일부터 제정,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1983년 3월 1일부터 개정,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1996년 2월 1일부터 개정, 시행한다.

부 칙

1. 이 지침은 1997년 6월 25일부터 개정, 시행한다.
2. 이 지침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관 및 관련법령의 규정 또는 통상 관례에 따른다.
3. 이 지침의 시행과 동시에 “이사회 분과위원회 규정”은 폐지한다.
4. (분과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) 이 지침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분과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위원은 이 지침에 의해 설치, 선임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이 지침은 1998년 7월 8일부터 개정,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지침은 2013년 3월 14일부터 개정,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지침은 2016년 5월 16일부터 개정,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지침은 2016년 9월 7일부터 개정, 시행한다.